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1.

발의자 : 김주영 · 박홍배 · 이학영

김태선 · 박정 · 박상혁

이용우 · 박균택 · 허성무

양문석 · 이정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%를 경감하는데,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